

정 관

제정 : 2023년 02월 18일

개정 : 2025년 03월 28일

개정 : 2025년 07월 09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경영지원협력회" (이하 '본회') 라 한다. 영문 명칭은 Global Management Support Association (약칭 GMSA) 라 한다. <개정 '25, 7, 9>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지부) 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제수준에 맞도록 한국의 경영지원협력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 7, 9>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과 연구용역
2.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개발 지원
3.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수행 및 관련 교육
4.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 ODA 및 국제조달 사업
5.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창업 및 신제품 개발 사업
6. 사회복지, 보육, 문화 및 학술 활동 관련 사업
7. 영유아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 <신설 '25, 7, 9>
8. AI를 활용한 각 사업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신설 '25, 7, 9>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5, 7, 9>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개정 '25, 3, 28>

-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5, 3, 28>
- ②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협회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5, 3, 28>
- ③ 준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5, 3, 28>
- ④ 특별회원은 국내 및 해외의 단체 또는 연구 기관 <신설 '25, 3, 28>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5, 3, 28>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관 및 협회의 제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4.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 ② 준회원은 협회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만을 가진다. <개정 '25, 3, 28>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4. 각급 회의 출석<신설 '25, 3, 28>
5.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신설 '25, 3, 28>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개정'25, 3, 28>

- ① 회원은 임의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5, 3, 28>
-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신설 '25, 3, 28>

- ③ 회원의 자격은 제2항에 의한 입회절차에 따라 지정한 기일내에 입회비 등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 부여된다. <신설 '25, 3, 28>
- ④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5, 3, 28>
- ⑤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5, 3, 28>

제8조의 2(회비) 회비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5, 3, 28>

제8조의 3 (회원 자격 상실) <신설 '25, 3, 28>

- 1. 협회의 탈퇴
- 2. 특별회원이 당해 기관·단체가 해산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을 결의한 경우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
- 4. 협회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원만한 협회 운영을 지속·반복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9조(포상) <개정 '25, 3, 28>

- ①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또는 외부 기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삭제 '25, 3, 28>

제9조의 2(징계) <신설 '25, 3, 28>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사과, 회원 자격정지,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실을 끼치거나 형법 제307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및 회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 2.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3.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5.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그 기간동안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 <개정 '25, 3, 28>

본회는 다음의 각호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개정 '25, 3, 28>
- ② 이사 15인 내외 <개정 '25, 3, 28>
- ③ 감사 2인 (감사 중 1인은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5, 7, 9>
- ④ 부회장 10인 내외 <개정 '25, 7, 9>

제11조 (임원의 선출) <개정 '25, 3, 28>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5, 3, 28>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불신임) <개정 '25, 3, 28>

- ① 협회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5, 3, 28>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실을 끼칠 경우
2. 형법 제307조에 의거 공언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3. 협회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직무 태만
4.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부정행위
5. 3개월 이상 협회 회비를 미납하는 행위
6. 기타 협회의 신뢰저하 및 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행하는 경우
- ②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총

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한다. <신설 '25, 3, 28>

③ 임원의 불신임을 발의한 경우 당해 임원에게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5, 3, 28>

④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과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25, 3, 28>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5, 3, 28>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된다. <신설 '25, 3, 28>

④ 회장의 사임 등 사유로 회장직의 궐위시에는 2개월내 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5, 3, 28>

⑤ 회장의 궐위시에는 가장 연장자의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25, 3, 28>

⑥ 협회 임원의 임기는 협회 회장의 임기 만료일과 동시에 종료된다.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도 같다. <신설 '25, 3, 28>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15조 5항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출

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5, 3, 28>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5, 3, 28>

1. 협회의 재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 <개정 '25, 3, 28>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개정 '25, 3, 28>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주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 ① <삭제 '25, 3, 28>
- ②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5, 3, 28>
- ③ 회장의 사임 등 사유로 회장직의 결위 시에는 2개월 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5, 3, 28>

제17조의 2 (명예회장)<신설 '25, 3, 28>

- ① 회장은 협회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 ②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협회의 중요한 업무와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첫째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5, 3, 28>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5, 3, 28>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개정 '25, 3, 28>

제21조 (의결과 운영) <개정 '25, 3, 28>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5, 3, 28>
- ② 총회에 대리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 3, 28>
- ③ 의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5, 3, 28>

제21의 2 (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5, 3, 28>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가 의결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5, 3, 28>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5, 3, 28>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5, 3, 28>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목적, 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일 7일전에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5, 3, 28>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개정 '25, 3, 28>

제27조 (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5, 3, 28>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신설 '25, 3, 28>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5, 3, 28>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특별회계)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
다.

제39조(찬조금 및 기부금)

본회는 관련 단체, 기업, 개인으로부터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 (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5, 7, 9>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5, 7, 9>

제43조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인증) 당 협회의 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함에 있어 제적 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인증을 축탁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2025년 7월 9일

사단법인 글로벌경영컨설팅협회 회장 장 정 미

이사 한 문 성

감사 위 성 팔

감사 김 세 진

이사 고 윤 실

이사 천 병 준

이사 송 동 섭

이사 고 홍 곤

